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23994 부작위위법확인 등 2025구합20459(공동소송참가) 부작위위법확인 등 2025구합20460(공동소송참가) 부작위위법확인 등
원 고	A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1. B 2.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이 사건 소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별지1]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 ○구 D 대 837.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 ○구 F 대 700.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는 2005. 2. 25. 원고이자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인 A(이하 '원고'라고만 함)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2005. 2. 25.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C는 2005.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그 후 C와 원고는 2007. 1. 1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3.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21. 이 사건 제1토지 중 766.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월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0. 1. 21. C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C와 원고는 2013. 2. 22. 이 사건 제1토지 중 766.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4,8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함)과 함께 2005. 5. 25.경부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해 왔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53㎡ 지상에 컨테이너박스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795㎡ 지상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바. C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인도 및 그 지상 컨테이너박스, 간이화장실의 수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위 소송의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하였던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6. 5. 26. C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가합103028호). 위 소송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별지1] 청구취지 중 예비적 청구 1. 다. ①, ②, ④, ⑤항 기재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결정 등을 하였다.

사. C는 위 바.항 기재 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에 기하여 위 판결 주문 제1항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집행관이 집행할 당시 원고가 아닌 참가인이 집행 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불능 처리되었다. 이에 C는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인도 및 그 지상 컨테이너박스, 간이화장실의 수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7. 8. 18. C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가합103520호). 위 소송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별지1] 청구취지 중 예비적 청구 1. 다. ⑧, ⑩ 내지 ⑭항 기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등을 하였다.

아. C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0. 4. 7. C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가단210668). 위 소송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별지1] 청구취지 중 예비적 청구 1. 다. ⑦항 기재 재산명시결정을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자. 한편, C는 2016. 6. 2. ○○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건축면적 417.58㎡, 건폐율 49.8484%, 연면적 합계 815.16㎡, 용적률 97.3093%,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건물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6. 6. 16.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차. 한편, 주식회사 E는 2015. 12. 23. ○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2토지상에 건축면적 346.25.58㎡, 건폐율 49.45%, 연면적 합계 2,519,54㎡, 용적률 279.92%,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건물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6. 1. 12.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신청에 관한 직권 판단

공동소송참가라 함은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민사소송법 제83조), 원고 본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자신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공동소송참가는 부적법하다.

나. 참가인의 신청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참가인의 소송은 원고의 소송과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소송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허용되는데, 여기서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67조에 정한 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별지1] 청구취지 중 주위적 청구에서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예비적 청구 1. 가. ㉰항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1. 다. ⑧ 내지 ⑭항에서 자신이 당사자인 판결 및 결정 등의 취소를, 1. 라.항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손해배상을 각 구하고 있는바, 참가인의 위 각 청구는 원고의 청구와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하므로, [별지1] 청구취지 중 위 참가인의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을 원고가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① [별지1] 청구취지 중 예비적 청구 1. 가. ㉮, ㉱, ㉲항에서 ○○시 ○구청이 C, G, H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이하 '이 사건 소 중 제① 부분'이라 함), ② [별지1] 청구취지 중 예비적 청구 1. 나.항에서 ○○시 ○○세무서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19. 7. 25.까지 한 부가가치세 12,073,270원 및 2008. 5. 27.부터 2019. 5. 31.까지 한 종합소득세 14,314,0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이하 '이 사건 소 중 제② 부분'이라 함), ③ [별지1] 청구취지 중 예비적 청구 1. 다. ① 내지 ⑦항에서 자신이 당사자인 판결 및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고(이하 '이 사건 소 중 제③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부분'이라 함), ④ [별지1] 청구취지 중 예비적 청구 1. 라. ②항에서 피고에 손해배상을 구한다(이하 '이 사건 소 중 제④ 부분'이라 함).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제①, 제②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제③ 부분은 법원의 판결 및 결정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적법하며, 제④ 부분은 부적법한 제③ 부분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제①, 제② 부분의 적법 여부에 판단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피고는 행정청이 아닌 법인격주체인 국가이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제③ 부분의 적법 여부에 판단

행정소송법상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 상고, 재심의 소, 즉시항고 등 민사소송절차로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에 대하여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제④ 부분의 적법 여부에 판단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본래의 항고소송인 위 (2)항 기재 청구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소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및 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천○○

판사 강○○

판사 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별지1]

청구취지[1)]

주의적으로,

1. 별지목록 제1-1, 2-1, 3-1, 4-1, 7, 8, 9, 10, 11, 12항 기재 부동산, 동산이 원고 B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고 B'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B'이고, '별지목록'은 '[별지3] 부동산 등 목록'을 지칭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예비적으로,

1. 가. ○○시 ○구청이 ㉮. 소외 C 에 대하여

①. 2003. 9. 25.에 한 취득세 24,819,330원, 지방교육세 1,654,622원, 농어촌특별세 1,654,622원 부과처분을,

②. 2016. 6. 16.에 한 I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처분을,

③. 2019. 11. 22.에 한 J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처분을,

㉯. 원고 B 에 대하여

①. 2006. 1. 25.에 한 등록면허세 18,000원 부과처분을,

②. 2006. 1. 25.에 한 K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③. 2006. 1. 25.에 한 등록면허세 18,000원 부과처분을,

④. 2011. 12. 15.에 한 등록면허세 18,000원 부과처분을,

⑤. 2014. 1. 26.에 한 등록면허세 27,000원 부과처분을,

⑥. 2016. 6. 13.에 한 가설건축물존치 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을,

⑦. 2016. 7. 11.에 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1차)을,

⑧. 2016. 8. 12.에 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2차)을,

⑨. 2019. 1. 30.에 한 등록면허세 140,000원, 지방교육세 25,000원 징수처분을,

㉰. 소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 에 대하여

①. 2015. 7. 31.에 한 취득세 3,500,000원, 지방교육세 350,000원, 농어촌특별세 700,000원 부과처분을,

②. 2015. 8. 24.에 한 취득세 7,800,000원, 지방교육세 780,000원, 농어촌특별세 1,560,000원 부과처분을,

③. 2015. 10. 26.에 한 취득세 3,455,000원, 지방교육세 345,500원, 농어촌특별세 691,000원 부과처분을,

④. 2015. 10. 28.에 한 취득세 3,500,000원, 지방교육세 350,000원, 농어촌특별세 700,000원 부과처분을,

⑤. 2015. 11. 2.에 한 취득세 3,176,000원, 지방교육세 317,600원, 농어촌특별세 635,200원 부과처분을,

⑥. 2015. 11. 16.에 한 취득세 3,176,000원, 지방교육세 317,600원, 농어촌특별세 635,200원 부과처분을,

⑦. 2015. 11. 17.에 한 취득세 3,794,000원, 지방교육세 379,400원, 농어촌특별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758,800원 부과처분을,

⑧. 2015. 11. 26.에 한 취득세 3,794,000원, 지방교육세 379,400원, 농어촌특별세 758,800원 부과처분을,

⑨. 2015. 11. 30.에 한 취득세 3,794,000원, 지방교육세 379,400원, 농어촌특별세 758,800원 부과처분을,

⑩. 2015. 12. 15.에 한 취득세 2,708,000원, 지방교육세 270,800원, 농어촌특별세 541,600원 부과처분을,

⑪. 2016. 1. 12.에 한 L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처분을,

⑫. 소외 H에 대하여 2016. 9. 30.에 한 취득세 0,000,000원, 지방교육세 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원 부과처분을,

나. ○○시 ○○세무서가 원고 A에 대하여

①. 2014. 1. 27.부터 2019. 7. 25.까지 한 부가가치세 12,073,270원 징수처분을,

②. 2008. 5. 27.부터 2019. 5. 31.까지 한 종합소득세 14,314,070원 징수처분을,

다. 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단2061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②. 위 같은 법원 M(4부) 고시를,

③. 위 같은 법원 2015가합103028 토지 인도 판결서를,

④. 위 같은 법원 N 대체집행 결정을,

⑤. 위 같은 법원 O(2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를,

⑥. 위 같은 법원 2019가단210668 부당이득금 판결서를,

⑦. 위 같은 법원 2021카명101683 재산명시 결정을,

⑧. 위 같은 법원 2016카단100907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⑨. 위 같은 법원 2016가합103520 토지 인도 판결서를,

⑩. 위 같은 법원 P 대체집행 결정을,

⑪. 위 같은 법원 Q(2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를,

⑫. 위 같은 법원 2018카확10019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⑬. 위 같은 법원 R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을,

⑭. 이 법원 2016구합22835 판결주문취소, 2016구합24091(중간확인) 판결주문취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판결서를 모두 취소하고,

라. 피고는 ①. 원고 B 앞으로 ㉮. 별지목록 제1, 2, 2-2, 3, 3-2, 4,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고,

㉯. 3,234,230,388원 및 그중, 73,128,574원에 대하여는 2003. 9. 25.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19.부터, 1,4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31.부터, 2,8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2. 2.부터, 2,8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3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3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1.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7. 1.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8. 2.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2.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0. 2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9.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 31.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2. 2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31.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29.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6.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7.부터, 943,182,000원 +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7.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3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3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3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8. 3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3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3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1. 30.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31.부터, 18,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25.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31.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2. 28.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31.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29.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31.부터, 195,846,800원[= 3,300,000원 + 192,546,800원에 대하여는 200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40%의,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31.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31.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30.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31.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30.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31.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31.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28.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는 2007. 3.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8.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2. 27.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9.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29.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8.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9.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0.부터, 6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부터, 3,65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7.부터, 3,65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30.부터, 3,6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29.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21.부터, 3,6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26.부터, 4,6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30.부터, 4,6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9.부터, 4,6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28.부터, 4,6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8.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25.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8.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9.부터, 18,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5.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28.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27.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8.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7.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8.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7.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0.부터, 27,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6.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7.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8.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7.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0.부터, 4,5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1.부터, 10,140,000원)에 대하여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2015. 8. 24.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4,491,500원(S T호 취득세)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4,5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4,128,8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부터, 4,128,8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6.부터, 4,932,2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4,932,2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7.부터, 4,932,2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3,520,4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4,800,000원 +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8.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8.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31.부터, 168,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30.부터, 3,840,000원(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019. 1. 25. 인도 24일간 차임)

대한민국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에 대하여는 2019. 1. 31.부터, 1,125,000원(소송비용)에 대하여는 2019.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877,718,934원(별지목록 제5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는 2019. 12. 23.부터, 63,751,980원(별지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는 2020. 7. 8.부터(U 취득세, 별지목록 제5항, 6항 기재 부동산 보증금, 차임은 문서 제출명령에 의하여 회신서가 이 법원에 도달하면 주장합니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 A 에게 906,587,340원 및 그중, 1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19.부터, 1,4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31.부터, 2,8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2. 2.부터, 2,8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3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3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1.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7. 1.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8. 2.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2.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0. 2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9.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 31.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2. 2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3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29.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3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3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3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8. 3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3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3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1. 30.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31.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31.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2. 28.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31.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29.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31.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40%의,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31.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31.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30.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31.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30.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31.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31.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28.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는 2007. 4.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8.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30.부터, 187,480원에 대하여는 2008. 5. 27.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3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2. 27.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30.부터, 15,660원에 대하여는 2009. 5. 28.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9.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29.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3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8.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9.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0.부터, 6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부터, 3,65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7.부터, 3,65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30.부터, 3,6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29.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21.부터, 3,6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26.부터, 4,6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30.부터, 4,6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9.부터, 4,6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28.부터, 4,6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8.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25.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9.부터, 118,340원에 대하여는 2011. 5. 1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8.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28.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27.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0.부터, 7,320원에 대하여는 2012. 5. 31.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8.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9.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3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7.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9.부터, 5,010,6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8.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7.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0.부터, 935,530원에 대하여는 2014. 1. 27.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7.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8.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163,960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467,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0.부터, 785,420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7.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4. 29.부터, 823,420원에 대하여는 2015. 5. 27.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9.부터, 483,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7.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5,211,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7.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294,190원에 대하여는 2016. 1. 25.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9.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1,921,270원에 대하여는 2016. 5. 25.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30.부터, 388,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31.부터, 1,166,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4.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596,750원에 대하여는 2017. 1. 25.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8.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3,987,810원에 대하여는 2017. 5. 18.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31.부터, 546,110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31.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부터, 7,376,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30.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부터, 2,412,380원에 대하여는 2018. 1. 23.부터, 5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31.부터, 5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8.부터, 5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0.부터, 5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30.부터, 693,050원에 대하여는 2018. 5. 24.부터, 5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5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부터, 1,181,9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4.부터, 5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부터, 5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1,193,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6.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터, 1,634,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2.부터, 1,081,070원에 대하여는 2019. 1. 23.부터, 313,750원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398,160원에 대하여는 2019.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89,170원에 대하여는 2019.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별지2]

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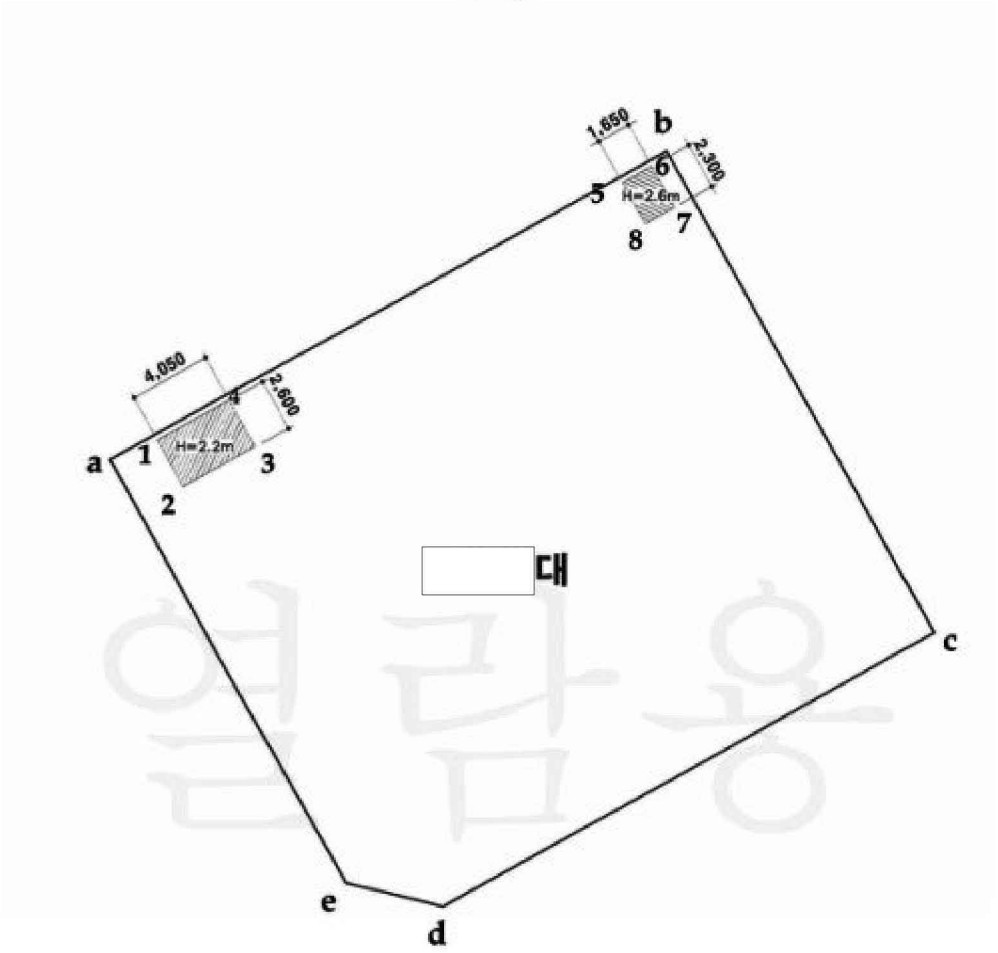

연번	설명	용도	구조	면적
1	별지 지적도 등본 기재 a, b, c, d, e, a 지상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컨테이너 박스	조립식 판넬즙 (4.05m×2.60m ×2.2m)	10.53㎡
2	별지 지적도 등본 기재 a, b, c, d, e, a 지상 5, 6, 7, 8, 5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간이 화장실	조립식 판넬즙 (1.65m×2.30m ×2.6m)	3.79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별지3]

부동산 등 목록[2)]

1. ○○시 ○구 [ ] **대** 837.7㎡

1-1. ○○시 ○구 [ ] **차** 837.7㎡,

2. ○○시 ○구 [ ] **대** 700.2㎡ 중, 감정도 표시 3, 4, 6, 7, 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6.4㎡,

2-1. ○○시 ○구 [ ] **차** 700.2㎡ 중, 감정도 표시 3, 4, 6, 7, 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6.4㎡,

3. ○○시 ○구 [ ] **대** 363.6㎡ 중, 별지1. 도면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00.0㎡

3-1. ○○시 ○구 [ ] **차** 363.6㎡ 중, 별지1. 도면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00.0㎡

4. ○○시 ○구 [ ] **대** 232.4㎡

4-1. ○○시 ○구 [ ] **차** 232.4㎡

5. ○○시 ○구 [ ]

일반 철골구조(철근) 콘크리트 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405.38㎡, 2층 409.78㎡

6. ○○시 ○구 [ ]

경량철골구조 지붕패널 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11.26㎡

7. 위 제1-1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있는 부동산(아스팔트콘크리트) 837.7㎡

8. 위 제2-1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있는 부동산(아스팔트콘크리트) 16.4㎡

9. 위 제3-1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있는 부동산(아스팔트콘크리트) 00.0㎡

10. 1동의 동산의 표시 : 건축주 [ ], 동산위치 위 제7, 8항 기재 부동산 지상 일부, 면적 11.25㎡(추정), 구조 경량 판넬, 용도 주차장 사무실, 구분 신축, 신축 연도 2003년, 비고 1층

2) '별지1 도면'은 '[별지4] 도면 1'을, '별지2 도면'은 '[별지4] 도면 2'를 각 지칭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10-1. 1동의 동산의 표시 : 건축주( ), 소유자 , 동산위치 위 제7, 8항 기재 부동산 지상 일부, 면적 10㎡, 구조 경량 판넬, 용도 주차장 사무실, 구분 증축, 개축 연도 2006년, 비고 1층

11. 1동의 동산의 표시 : 건축주 , 소유자 , 동산위치 위 제8, 9항 기재 부동산 지상 일부, 면적 3.6㎡, 구조 경량 판넬, 용도 화장실, 구분 증축, 건축 연도 2003년, 비고 1층

12. 위 제4-1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있는 공작물 중, ㉠.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00.0㎡ 및 별지2 도면표시 5, 6, 7, 8, 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000.0㎡ 지상에 아스팔트콘크리트, ㉡. 별지2 도면표시 3, 4, 5, 6, 3.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00.0㎡ 지상에 콘크리트블록

13.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름 모름과 사이의 1973. 4. 17.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14. 위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와 사이의 2003. 9. 24.자 증여계약서

15. 위 제7, 8, 9, 10항 기재 부동산 동산에 관하여 와 사이의 2003. 11. 18.자 부동산, 동산 매매계약서

16. 위 제7, 8, 9, 10, 11항 기재 부동산 동산에 관하여 과 사이의 2004. 2. 28.자 부동산, 동산 매매계약서

17. 위 제12항 기재 부동산 동산에 관하여 와 원고 사이의 2005. 11. 30.자 부동산공사 매매계약서

18. 가 2015. 8. 27. 작성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별지4]

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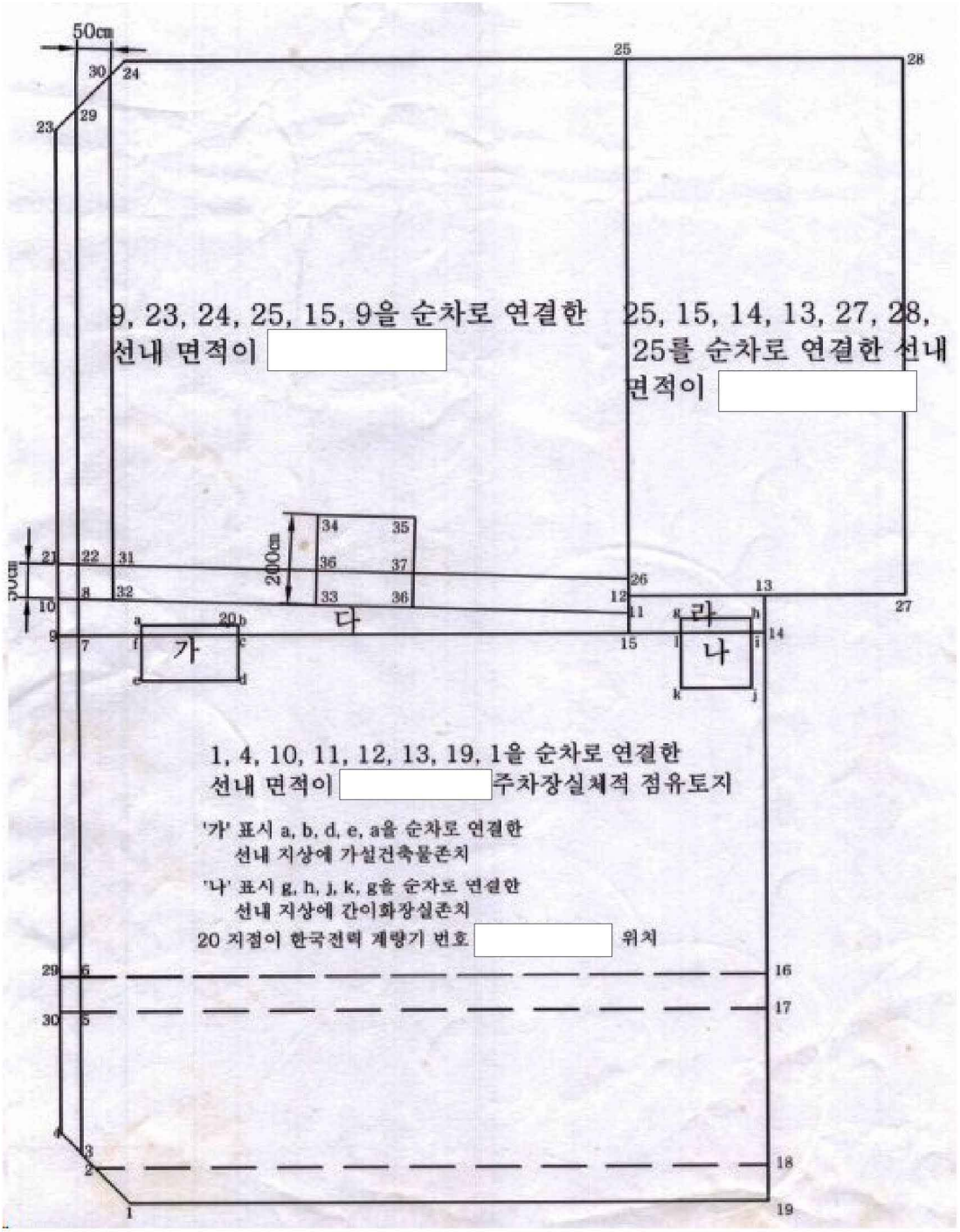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도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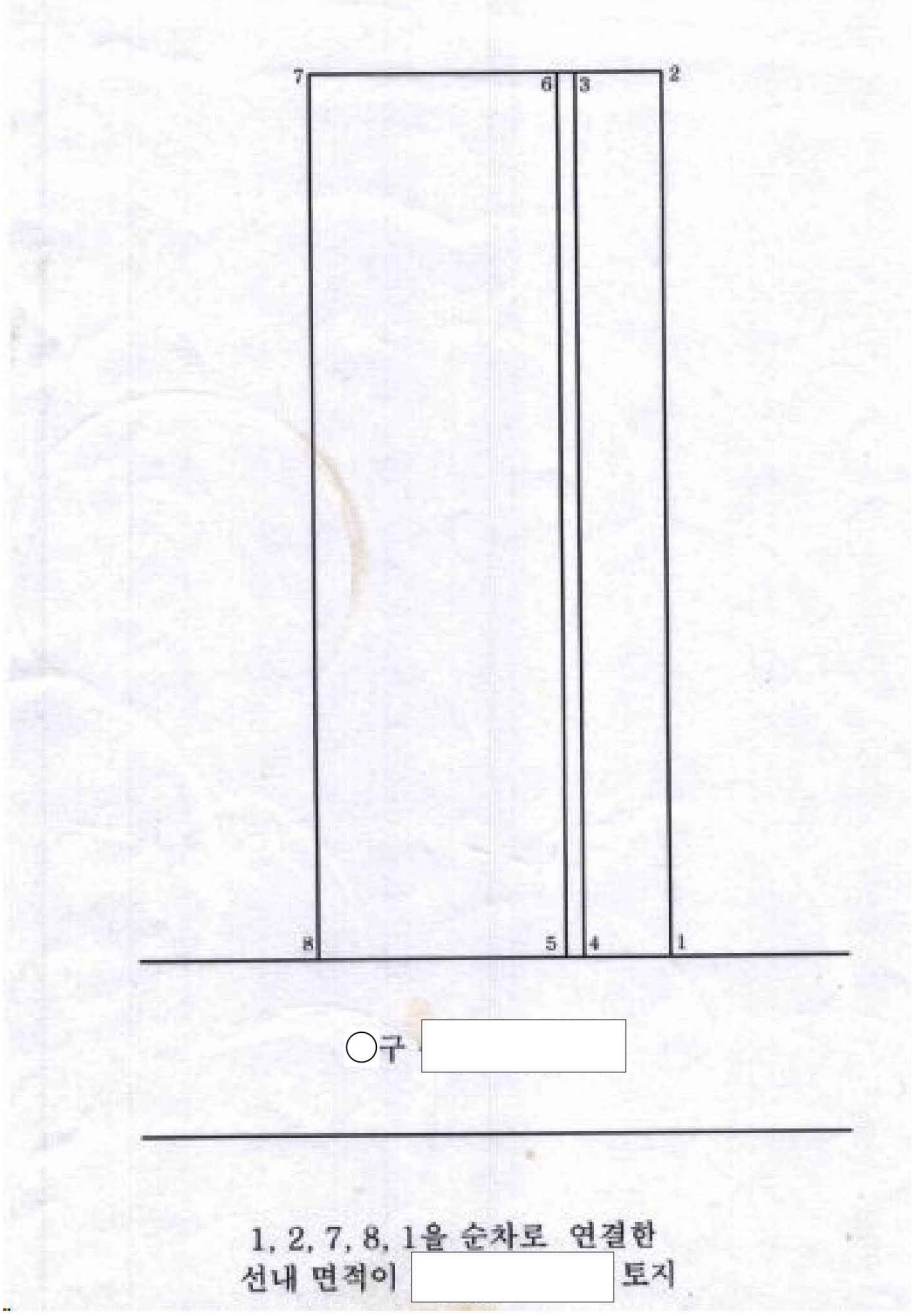

1, 2, 7, 8,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면적이 토지